



2017년부터 달라지는
주요 환경제도



1.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

환경부 | 공원생태과 (☎ 044-201-7312)

지역경제 활성화와 탐방객 및 지역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.
 -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해당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또한, 해안·섬지역에서 관리사무소, 진료시설, 탈의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탐방객 편의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[참고]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현행법령>자연공원법(제18조)

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

- 추진배경 지역 주민·탐방객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주요내용 ①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적 가설건축물 설치 및 물건 적치 허용
② 자연환경지구(해안·섬지역) 내 탐방객 편의시설 한시적 허용
- 시행일 2017년 5월 30일

2. 냉매 제조·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

환경부 | 신기후체제대응팀 (☎ 044-201-6966)

냉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를 제조·수입할 경우,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냉매판매량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염화불화탄소(CFCs), 수소염화불화탄소(HCFCs), 수소불화탄소(HFCs) 등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판매량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.
 - 2016년 하반기에 냉매를 제조·수입하였을 경우, 냉매의 종류, 판매량,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2017년 1월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(<http://www.rims.or.kr>)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제조·수입한 냉매가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고물질에 해당하여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된 경우는 냉매판매량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냉매 제조·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추진계획

- 추진배경 기후변화 영향이 큰 냉매의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냉매판매량 현황 파악
- 주요내용 냉매 제조·수입시 냉매의 종류, 양,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3.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

| 환경부 | 토양지하수과 (☎ 044-201-7177)

오염토양 정화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처리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반출정화를 허용토록 되어 있었고, 부지면적의 개념이 불명확하였습니다.
 - 2017년부터는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,
- 또한,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적용토록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.

[참고]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환경법령>고시/훈령/예규>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

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

- **추진배경**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, 관련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
- **주요내용**
 - ① 오염토양 반출정화 요건 완화(200제곱미터 미만 → 300제곱미터 미만)
 - 오염토양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
 - ②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의 면적으로 개념 명확화
- **시행일** 2017년 1월

4. 위해우려제품 안전·표시기준 강화

환경부 | 화학제품TF팀 (☎ 044-201-6825)

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,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(全)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CMIT/MIT*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금지

* (CMIT) 5-Chloro-2-methyl-4-isothiazolin-3-one,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
(MIT) 2-Methyl-4-isothiazolin-3-one, 메틸이소티아졸론

-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, 첨가 사유(용도),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
-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·토너,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, 실내·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

참고 |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고시/훈령/예규>고시개정안 확인

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강화

- 추진배경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·표시기준 강화
- 주요내용 ①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(인쇄용 잉크·토너, 다림질보조제, 살조제)
② 안전·표시기준 강화(CMIT/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금지, 표시사항 추가)
- 시행일 2016년 12월(잠정,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)

5. 환경기업,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

| 환경부 |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(☎ 032-560-7861)

국내 환경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술개발(R&D)부터 실증실험, 해외진출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One-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가 2017. 6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.

- 그동안 국내 환경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실증실험 실적확보 등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최초 실증실험 중심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- 또한, 연구단지는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의 체계적·전문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두할 있도록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초기 입주기업(1~3년)은 임대료·사용료 감면(30~50%), 실증실험 우선지원, 실험분석료 할인(50~70%) 등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참고]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(www.keiti.re.kr)>주요사업>환경산업 육성

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개요

- **위치**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인접부지
- **기간** '13~'17(5년), '17.6월 개소예정
- **총사업비** 1,464억 원(국비 100%)
- **면적** 부지면적 18만㎡, 연면적 44천㎡
- **주요시설** 연구지원시설, 파일럿테스트, 테스트베드, 시제품생산지원시설 등



6.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·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

| 환경부 | 자원재활용과 (☎ 044-201-7383)

소비자의 현재 물가상황을 반영하여 보증금액을 현실화 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.

- 지난 22년간 빈병 보증금은 현재 물가와 동떨어지게 인상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.
 - 2017년 1월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 40원→100원, 맥주병 50원→130원으로 인상됩니다.
 - * '17. 1. 1 이후 출고·수입되는 제품에 적용(이전 빈병은 기존 보증금 반환)
- 아울러,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·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됩니다.
 - * (예시) 크기-150% 이상 확대, 색상-붉은색 등

[참고]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환경정책>자원순환

비용기보증금액 인상 및 재사용표시 변경

- 추진배경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5.1)
 -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비용기보증금액 인상
 - 「비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·후 빈병구분
- 주요내용 ① 비용기보증금액 인상(소주40원→100원, 맥주50원→130원)
②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(150%이상 확대, 붉은색 등)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7.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

| 환경부 | 화학안전과 (☎ 044-201-6832)

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.

- 유해화학물질 운반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했으나, 2016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.
- 단,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.

|참고| 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현행법령>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

유해화학 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

- 추진배경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
- 주요내용 ①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으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 가능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(시행잠정, 개정안 행정예고중)

8. 사업장 허가·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

| 환경부 |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(☎ 044-201-6724)

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,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(절차 통합) 복잡하게 얽혀있는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 로 통합·간소화
 - (환경관리 최적화) 다양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조건과 배출기준 부여, 효과적 환경보호 체계로 전환
 - (기술 기반) 오염배출은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도 높이는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하여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 작성·제공
 - (원스톱 서비스) 허가의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합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
 - (합리적 사후관리)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·보완하고,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
-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 연차적으로 시행되며,
 -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.

9.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

| 환경부 | 교통환경과 (☎ 044-201-6932)

2016.8.4 환경부-수도권 3개 지자체(서울, 인천, 경기도)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(옹진군,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 제외)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계획입니다.

- 운행제한제도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·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.
 - 지금까지 운행제한제도는 올림픽대로,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, 2017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실시됩니다.
 -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 설치·운영 중이며, '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·운영될 예정입니다.

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

- 추진배경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
- 주요내용 - 서울시 13개 지점 → '17년 서울시 전역(32개 지점) → '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(157개 지점)
-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(최대 200만원까지 부과)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10.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

| 환경부 | 물환경정책과 (☎ 044-201-7014)

바닥분수, 물놀이형 놀이터 등 물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*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없이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,
* 수돗물,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·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, 연못, 폭포,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
- 2017.1월부터는 대상시설 신고가 의무화되고, 수질 및 관리기준이 적용되며,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.

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 내용

- 추진배경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물놀이 시설 수질관리기준 도입 시급
- 대상시설 ① 국가·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(민간위탁 시설도 포함)
② 민간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, 관광지 및 관광단지, 도시공원, 체육시설,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
- 주요내용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('17.1.28부터)
②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도입·적용
- pH(5.8~8.6), 탁도(4NTU 이하), 대장균(200개체수/100mL 미만), 유리잔류염소(0.4~4.0mg/L), 수질검사(1회/15일)
- 심 30cm 이하 유지, 부유물·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, 용수 여과 및 소독,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·보관 등
③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
-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(기존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)

11.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

| 환경부 | 수질관리과 (☎ 044-201-7064)

2017년 1월 28일부터 산업단지·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2년간 3회 위반한 시설만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,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- 2017년도 기술진단 의무 대상 시설은 65개로 기한은 연도말까지이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- 참고로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2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(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위탁·운영중인 시설은 제외)만이 할 수 있으며, 비용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 고시(환경부 고시 제2013-143호)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

- **추진배경**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술진단 도입
- **주요내용** ① 모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② 기술진단 의무대상 시설이 기술진단을 정해진 기간내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**시행일** 2017년 1월 28일

12. 조류(녹조)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

환경부 | 수질관리과 (☎ 044-201-7061)

조류(녹조)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의 대상을 기존 호소(호수 등 물이 가두어진 곳)에서 하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환경부 장관은 조류의 발생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소의 수면관리자나 취·정수시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
 - 환경부 장관이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댐이나 보의 비상방류, 조류제거, 취·정수시설 정수처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.
- 지금까지는 호소의 수면관리자와 취·정수장 관리자만을 대상으로만 하였으나, 앞으로는 하천과 호소를 포함한 모든 공공수역의 관리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.

[참고]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현행법령>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(제21조의5)

조류 피해예방 조치

- **추진배경** 조류 피해예방을 위해 호소 뿐 아니라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에서 적극적인 조치 요청 필요
- **주요내용** ①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
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**시행일** 2017년 1월 28일

13. 국내 비점오염원,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

환경부 | 수생태보전과 (☎ 044-201-7044)

국내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68%의 비중('10년, BOD기준)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관계 부처,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점오염 관리를 종합하여 연계·조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,
 - 2017년부터 관계기관의 소관별 대책을 환경부가 종합하여 5년 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환경부에서 관계기관의 이행실적을 매년 취합하여 평가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 강화·보완을 요청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[참고]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·해명>보도자료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

비점오염원 종합대책 수립계획

- 추진배경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 관리 필요
- 주요내용
 - ① 종합대책 수립(5년마다)
 - 관계기관 소관별(도시·농촌·산림 등),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제출
 - 환경부는 전문적·기술적 검토를 통해 종합대책 확정
 - ② 이행실적 평가·보완
 - 관계기관의 소관별 대책의 이행 결과를 매년 환경부 장관에 제출
 - 환경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완·강화하도록 요청
- 시행일 2017년 1월 28일

14.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

| 환경부 | 공원생태과 (☎ 044-201-7312)

자연공원의 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해 이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자연공원의 관리가 공원관리청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, 공원 구역 내에서 재산권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
 - 2017년부터는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경관 보전·관리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을 지원하고, 이를 통해 공원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|참고|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현행법령>자연공원법(제20조의2)

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

- 추진배경 공원관리 효율성 제고 및 토지소유자 등 지원 필요성
- 주요내용 ① 토지 소유자 등과의 공원보호협약 체결
② 공원보호협약 체결 상대방에 대한 지원
- 시행일 2017년 5월 30일

15. 폐기물 수집·운반 기준 강화 시행

| 환경부 | 폐자원관리과 (☎ 044-201-7370)

도심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를 유발했던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의 과다적재나 악취 누출 등의 문제점이 차량 선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.

●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밀폐형 덮개 설치 등 관련 규정을 2014년 12월에 개정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.

- 생활폐기물, 음식물류 폐기물, 사업장폐기물 등은 201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·운반해야 한다.

2017년도 폐기물 수집·운반 기준 강화

- 추진배경 폐기물 수집·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 필요
- 주요내용 ①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하여 수집·운반
- 시행일 2017년 1월

16. 수도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

| 환경부 | 수도정책과 (☎ 044-201-7120)

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도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브롬산염은 수도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(11)되어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 등을 검사해 왔습니다.
 -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인체위해도가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의 약 1/10로 나타나, 선제적으로 위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.
- 수도사업자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5만톤/일 이상 정수장에 대하여 월 1회로 수질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고, 2018년 부터는 모든 수도시설로 검사를 확대하여야 합니다.

[참고]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최근 제·개정된법령 >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(2017.1.1 시행)

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

- 추진배경 수도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
- 주요내용 ① 수도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도물의 안전성을 강화
② 2017년 1월1일부터 5만톤/일 이상 정수장부터 적용, 월1회 수질검사 시행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(하루처리 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)
※ 2018년 1월부터 모든 정수장 적용(마을상수도, 소규모급수시설, 전용상수도 등)